

제1945호 고양시보

2023년 1월 17일(화)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80호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23-81호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양시 공고 제2023-83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양시 공고 제2023-87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9
고양시 공고 제202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고양시 공고 제2023-91호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5
고양시 공고 제2023-93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고양시 공고 제2023-94호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고양시 공고 제2023-95호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고양시 공고 제2023-99호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고양시 공고 제2023-10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고양시 공고 제2023-10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6
고양시 공고 제2023-102호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고양시 공고 제2023-103호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3

제1945호

고양시보

2023년 1월 17일(화)

차 례

고양시 공고
제2023-105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0

고양시 공고
제2023-10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고양시 공고
제2023-109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34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25호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138

고양시 고시
제2023-28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141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 전 화 : 관광과 관광개발팀(031-8075-3407)

- 팩 스 : 031-8075-492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자문) 시장은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 부진 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업(轉業)”을 “업종 전환”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에 위반되거나”를 “법을 위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판매금지) 제1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제3항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관광과
입안자	과장 성명	관광과장 김 동 원
	팀장 성명	관광개발팀장 반 예 경
	담당자 성명·전화	문 승 현 031-8075-34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고양시 <u>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1.~3. (생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u>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개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개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관광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제2조(정의) ----- ----- ----- ----- <u>관광진흥위원회</u>----- -----. 1.~3.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자문) 시장은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관광진흥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 부진 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호의 사항을 자문 ·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부진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삭 제〉

〈삭 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정 취소) (생 략) 1. <u>전업(轉業)·폐업</u> 등으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지 <u>아니하는</u> 경우 2. <u>법에 위반되거나</u>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4. (생 략) 제11조(판매금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고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업무 위탁) ① (생 략) 1.~3. (생 략) ② (생 략) ③ 수탁자는 기존 시설 및 구조를 <u>변경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16조(준용) 제12조에 따라 상설매장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정 취소) (현행과 같음) 1. <u>업종 전환</u>----- -----<u>않</u> <u>는</u>----- 2. <u>법을 위반하거나</u>----- ----- 3.~4. (현행과 같음) 제11조(판매금지) 제1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업무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변</u> <u>경하려고</u>-----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미세먼지대응 대책위원회를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내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301호

- 전 화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8075-2672)

- 팩 스 : 031-8075-494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은”을 “기본계획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중 “미세먼지에 대한”을 각각 “미세먼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반 교육사업”을 “각종 교육 사업”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팀장 성명	미세먼지대응팀장 조중옥
	담당자 성명·전화	강새롬 031-8075-267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기본계획</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u>미세먼지</u>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u>미세먼지</u>에 대한 저감 사업 라. (생략)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u>미세먼지</u>에 대한 저감 사업 바. (생략) 사.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제반 교육사업 아. (생략) 3. (생략)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u>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u>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u> 2. <u>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u> 3. <u>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u> 4. <u>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 5. <u>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u>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본계획</u>에는-----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미세먼지</u> ----- 다. -----<u>미세먼지</u> ----- 라. (현행과 같음) 마. -----<u>미세먼지</u> ----- 바. (현행과 같음) 사. ----- -----<u>각종 교육 사업</u>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2조(<u>미세먼지 사업의 심의·자문</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고양시환경기본 조례</u>」 제22조에 따른 <u>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u>의 심의를 받거나 <u>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u>에 자문할 수 있다. 1. <u>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u> 2. <u>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u> 3. <u>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사업의 평가</u> 4. <u>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u> 5. <u>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u>

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2. <u>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u>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u> ②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삭 제>
제18조(간사) ① <u>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u> ② <u>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u>	<삭 제>
제19조(수당 등) <u>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삭 제>
제21조(준용) <u>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	<삭 제>
제22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삭 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상 모호한 기준 해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연습사용료의 ‘18홀’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 나. 월회원을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별표 2).
- 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중 영유아, 기저질환자, 초고령자 등의 동반자(보호자 등) 동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호).
- 라.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호라목).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체육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체육정책과

- 전 화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031-8075-2323)

- 팩 스 : 031-8075-492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습사용료”라 함은”을 ““연습사용료”란”으로, “연습사용시”를 “연습사용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어린이”이란”을 ““어린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개·보수”를 “개선·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없이 이용하는 영유아, 기저질환자, 초고령자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사용하려고”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전액감면 :”을 “전액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단체 설립에”를 “단체설립에”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만15세”를 “15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전용사용”을 “전용사용, 연습사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를 “입장권을 미사용하였다는”으로 한다.

라. 사용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의 파크골프장의 비고란 중 “18홀 장비대여료”를 “장비대여료”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 1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체육정책과장 이 승 재
	팀장 성명	체육정책팀장 이 봉 재
	담당자 성명·전화	남 민 현 031-8075-232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3. (생략) 4. “<u>연습사용</u>”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u>연습사용료</u>”라 함은 <u>연습사용시</u>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6. (생략) 7. “<u>어린이</u>”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10. (생략)	제2조(정의) ----- -----<u>다음과</u>-----. 1.~3. (현행과 같음) 4. ----- ----- ----- ----- “<u>연습사용료</u>”란 <u>연습사용 시</u>-----. 5.~6. (현행과 같음) 7. “<u>어린이</u>”란----- -----. 8.~10.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생략) 1. (생략) 2. 시설의 <u>개·보수</u> 3. 시설의 <u>이용시</u>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생략)	제6조(개방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개선·보수</u> 3. -----<u>이용 시</u>----- --- 4.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생략) 1.~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동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없이 이용하는 영유아, 기저질환자, 초고령자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u>사용하고</u> 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사용료) ① -----<u>사용하려고</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생 략) 1. <u>전액감면</u> :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생 략) 3. (생 략) 가.~라. (생 략) 마.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생 략) 사.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파. (생 략) 4. (생 략) 가.~라. (생 략) 마. 셋째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u>만15세</u> 이하의 자녀(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한다) 바. (생 략)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u>전액면제</u>:-----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u>단체설립</u>----- ----- 바. (현행과 같음) 사. 「<u>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 ----- 아.~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u>15세</u>----- ----- 바.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1. <u>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u>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다. (생 략) <u><신 설></u> 2.~4. (생 략) ② <u>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u>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u>전용사용, 연습사용</u>----- -----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사용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u> 2.~4. (현행과 같음) ② <u>입장권을 미사용하였다는</u>----- ----- ----- -----

여야 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u> <u>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연습사용료										연습사용료									
1. 시설별 연습사용료										1. 시설별 연습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실내체육관 (보조포함)				3,000	2,500	2,000	2,500	2,000	1,800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	20,000	18,000	15,000	1,000	800	500	800	600	400										
체력단련장 (헬스장)	50,000	40,000		4,000	3,500		3,500	3,000											
테니스장 (면당)	평일			6,000	5,000	4,000	4,000	3,500	3,000										
	토·공휴일			8,000	7,000	6,000	6,000	5,000	4,000										
다목적체육관				3,000	2,500	2,000	2,500	2,000	1,800										
수영장	60,000	50,000	40,000	4,000	3,500	3,000	3,500	3,000	2,500										
다이빙풀	72,000	60,000		5,000	4,000		4,000	3,500	3,000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15,000															
다이빙풀 (프리다이빙)				10,000															
빙상장	70,000	65,000	55,000	4,000	3,500	3,000	3,500	3,000	2,500										
인공 암벽장	평일	45,000	40,000	35,000	2,000	1,500	1,000												
	토·공휴일				3,000	2,000	1,500												
전용배드민턴장	20,000	13,000	10,000	2,000	1,500	1,000													
스쿼시장, 라켓볼장	72,000	60,000	48,000	5,000	4,000	3,000	4,000	3,000	2,500										
파크골프장	45,000	30,000	30,000	3,000	2,000	2,000				18홀 장비대여료 1,000원									
실내골프연습장	75,000	65,000	55,000	6,000	5,000	4,000													
볼링장	평일			3,000	2,000					신발 대여료 1,000원									
	토·공휴일			3,500	2,200														

[별표 2]										[별표 2]									
연습사용료										연습사용료									
1. 시설별 연습사용료										1. 시설별 연습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실내체육관 (보조포함)				3,000	2,500	2,000	2,500	2,000	1,800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	20,000	18,000	15,000	1,000	800	500	800	600	400										
체력단련장 (헬스장)	50,000	40,000		4,000	3,500		3,500	3,000											
테니스장 (면당)	평일			6,000	5,000	4,000	4,000	3,500	3,000										
	토·공휴일			8,000	7,000	6,000	6,000	5,000	4,000										
다목적체육관				3,000	2,500	2,000	2,500	2,000	1,800										
수영장	60,000	50,000	40,000	4,000	3,500	3,000	3,500	3,000	2,500										
다이빙풀	72,000	60,000		5,000	4,000		4,000	3,500	3,000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15,000															
다이빙풀 (프리다이빙)				10,000															
빙상장	70,000	65,000	55,000	4,000	3,500	3,000	3,500	3,000	2,500										
인공 암벽장	평일	45,000	40,000	35,000	2,000	1,500	1,000												
	토·공휴일				3,000	2,000	1,500												
전용배드민턴장	20,000	13,000	10,000	2,000	1,500	1,000													
스쿼시장, 라켓볼장	72,000	60,000	48,000	5,000	4,000	3,000	4,000	3,000	2,500										
파크골프장	45,000	30,000	30,000	3,000	2,000	2,000				장비대여료 1,000원									
실내골프연습장	75,000	65,000	55,000	6,000	5,000	4,000													
볼링장	평일			3,000	2,000					신발 대여료 1,000원									
	토·공휴일			3,500	2,200														

비고

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심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 스크린골프연습장 1회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9홀	18홀
개인게임(1인)	8,000	13,000
팀게임(1인)	5,000	8,000

2. 그 밖에 스케이트 대여, 연마료 등

(단위: 원)

스케이트 대여료 (스피드, 피겨, 하키)	안전모 대여료	스케이트 연마료	스케이트 보관료(월)	
3,000	500	3,500	주3회	일반 20,000 선수 25,000
			주6회	일반 30,000 선수 35,000
○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비고

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 1회)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일·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심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 스크린골프연습장 1회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9홀	18홀
개인게임(1인)	8,000	13,000
팀게임(1인)	5,000	8,000

2. 그 밖에 스케이트 대여, 연마료 등

(단위: 원)

스케이트 대여료 (스피드, 피겨, 하키)	안전모 대여료	스케이트 연마료	스케이트 보관료(월)	
3,000	500	3,500	주3회	일반 20,000 선수 25,000
			주6회	일반 30,000 선수 35,000
○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3.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일 1회 1시간 공사기준)

(단위: 원)

구 분	대 상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일 반	20,000	35,000	45,000	50,000	54,000	60,000
	청소년	15,000	30,000	38,000	43,000	45,000	50,000
	어린이	12,000	23,000	31,000	35,000	38,000	40,000
생존수영	일 반	25,000					
	청소년	22,000					
	어린이	20,000					
다이빙풀	일 반	24,000	42,000	54,000	60,000	65,000	72,000
	청소년	18,000	36,000	46,000	52,000	54,000	60,000
	어린이	15,000	28,000	37,000	42,000	46,000	48,000
빙상장	일 반	34,000	45,000	52,000	58,000	62,000	70,000
	청소년	31,000	42,000	48,000	55,000	59,000	65,000
	어린이	26,000	35,000	43,000	47,000	50,000	55,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스피닝	일반		45,000	60,000			
	청소년		36,000	48,000			
테니스장	일 반	11,000	21,000	32,000	42,000	52,000	62,000
	청소년	9,000	18,000	26,000	33,000	40,000	47,000
	어린이	8,000	15,000	23,000	30,000	37,000	44,000
보조경기장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인공암벽장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실내골프연습장	일 반	50,000	75,000	100,000	125,000	150,000	175,000
	청소년	44,000	65,000	88,000	109,000	130,000	153,000
	어린이	34,000	50,000	68,000	84,000	100,000	118,000
	스크린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스쿼시장 라켓볼장	일 반	24,000	42,000	54,000	60,000	65,000	72,000
	청소년	18,000	36,000	46,000	52,000	54,000	60,000
	어린이	15,000	28,000	37,000	42,000	46,000	48,000

3.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일 1회 1시간 공사기준)

(단위: 원)

구 분	대 상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일 반	20,000	35,000	45,000	50,000	54,000	60,000
	청소년	15,000	30,000	38,000	43,000	45,000	50,000
	어린이	12,000	23,000	31,000	35,000	38,000	40,000
생존수영	일 반	25,000					
	청소년	22,000					
	어린이	20,000					
다이빙풀	일 반	24,000	42,000	54,000	60,000	65,000	72,000
	청소년	18,000	36,000	46,000	52,000	54,000	60,000
	어린이	15,000	28,000	37,000	42,000	46,000	48,000
빙상장	일 반	34,000	45,000	52,000	58,000	62,000	70,000
	청소년	31,000	42,000	48,000	55,000	59,000	65,000
	어린이	26,000	35,000	43,000	47,000	50,000	55,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스피닝	일반		45,000	60,000			
	청소년		36,000	48,000			
테니스장	일 반	11,000	21,000	32,000	42,000	52,000	62,000
	청소년	9,000	18,000	26,000	33,000	40,000	47,000
	어린이	8,000	15,000	23,000	30,000	37,000	44,000
보조경기장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인공암벽장	일 반	15,000	28,000	36,000	40,000	45,000	50,000
	청소년	13,000	22,000	30,000	36,000	42,000	46,000
	어린이	12,000	20,000	28,000	34,000	40,000	44,000
실내골프연습장	일 반	50,000	75,000	100,000	125,000	150,000	175,000
	청소년	44,000	65,000	88,000	109,000	130,000	153,000
	어린이	34,000	50,000	68,000	84,000	100,000	118,000
	스크린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300,000
스쿼시장 라켓볼장	일 반	24,000	42,000	54,000	60,000	65,000	72,000
	청소년	18,000	36,000	46,000	52,000	54,000	60,000
	어린이	15,000	28,000	37,000	42,000	46,000	48,000

1.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할인
 - 토·일·공휴일 포함된 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단체, 군인은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3. 30분추가 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 시 적용함
4.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위주, 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일의 50% 이상 강습이 포함될 경우는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6. 생존수영은 주1회 적용이며, 횡수 추가시 요금을 합산 적용함
7.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1.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할인
 - 토·일·공휴일 포함된 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단체, 군인은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3. 30분추가 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 시 적용함
4.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위주, 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일의 50% 이상 강습이 포함될 경우는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6. 생존수영은 주1회 적용이며, 횡수 추가시 요금을 합산 적용함
7.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함(안 제8조).
- 나. 전산직렬 임용시험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점 자격증으로 전환함(안 별표 4, 별표 7 및 별표 14).
- 다. 해양수산·항공·조리 및 시설(지적) 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정비함(안 별표 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행정지원과 인사팀(031-8075-2387)

- 팩 스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데이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산업기사 : 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14 제1호 중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팀장 성명	인사팀장 문병훈
	담당자 성명·전화	윤상건 031-8075-2387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위 생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위 표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u>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u>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u> <u>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중 구분표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산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작성분야)	<삭 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사 서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속 기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수 의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신 설>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신 설>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신 설>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신 설>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신 설>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 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 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 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신 설>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신 설>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 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신 설>) 기사(지적, <신 설>)	기술사(지적, <신 설>) 기사(지적, <신 설>) <신 설>	기술사(지적, <신 설>) 기사(지적, <신 설>) 산업기사(지적, <신 설>) <신 설>
	위 생 위 생 사 역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신 설>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신 설>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위 표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 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 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 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 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위 생 위 생 사 역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위 표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신 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신 설>
	데이터	
(생 략)		

[별표 1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2항 관련)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사회복지		(생 략)	
<신 설>			
(생 략)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현행과 같음)		

[별표 1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2항 관련)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별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현행과 같음)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비사업 해제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을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 나. 검증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3조제6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정비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정비관리과 재정비계획팀(031-8075-3432)

- 팩 스 : 031-8075-493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회”를 “개의회(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정비관리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재정비관리과장 공 석
	팀장 성명	재정비계획팀장 한 상 선
	담당자 성명·전화	이 상 범 031-8075-34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② (생략)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부시장----- -----호선-----.	③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 -----호선(互選)-----.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 하고 출석한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 <u>개의(開議)</u> ----- -----.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⑪ (생략)	⑦~⑪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생태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구성하였으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하고 임의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생태하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3 충헌빌딩 3층
- 전 화 :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031-8075-2769)
- 팩 스 : 031-8075-492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생태하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이 동 희
	팀 장 성 명	생태하천팀장 최 금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한 울 031-8075-2769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 등 정책 자문에 따른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함(안 제9조).
-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질병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 전 화 :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031-8075-4661)

- 팩 스 : 031-8075-488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의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공 석
	팀 장 성 명	감염병관리팀장 이 미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예 은 031-8075-466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 〈신설〉 ③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삭제〉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의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2. 보건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한 사람</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u>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삭 제></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6조 및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나.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다. 환경교육에 관하여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8075-2830)

- 팩 스 : 031-8075-492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
7. 환경교육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환경교육 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④ 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7. 지역 환경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경비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와 환경교육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이 사업 예산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1조(환경교육 정보망 구축)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자문한 경우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팀장 성명	환경교육팀장 원은주
	담당자 성명·전화	이건주 (031-8075-2830)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법원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	제3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진다.

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
7. 환경교육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환경교육 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④ 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

제5조(의견정취)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제1부시장이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삭 제>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에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

<삭 제>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고양형 혁신교육 지원 사업계획”에 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시 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사항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

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교육관련 사업의 전부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7. 지역 환경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제18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백서 및 우수사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경비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와 환경교육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이 사업 예산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1조(환경교육 정보망 구축)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 굴하여 홍보한다. <신 설> 제2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 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 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료 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관 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8조).

나. 교육센터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8075-2830)

- 팩 스 : 031-8075-492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키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
 - 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 시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에 둔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3.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
5.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전시
8.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
9.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교육센터의 교육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단체 지원)”을 “(경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휴관하고자 할”을 “휴관하려고 하는”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중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받고자”를 “받으려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자문한 경우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환경정책과장 조 영 자
	팀 장 성 명	환경교육팀장 원 은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건 주 031-8075-28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 고양어린이박물관, 키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 3.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 <u>제3조(명칭 및 위치)</u>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생태교육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대화동) 2. 호수자연학습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장항동) <u>제4조(업무와 기능) ① (생략)</u> 1. 생태·환경 교육·체험 행사 개발 및 지원 2. 생태·환경 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 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키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 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 <u>제3조(명칭 및 위치)</u>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에 둔다. <u>제4조(업무와 기능) ① (현행과 같음)</u>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3. <u>생태·환경 교육 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u> 4. <u>생태·환경 교육 수요조사 총괄</u> 5. <u>생태·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u> 6. <u>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u> 7. <u>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u> 8. <u>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u> 9. <u>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u> ② (생 략) 제6조(위탁 운영) ① <u>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교육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② (생 략) 제7조(단체 지원) ① <u>시장은 생태·환경 관련 단체 또는 생태·환경 관련 비영리법인이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운영 자문) <u>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u>	3. <u>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u> 4. <u>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u> 5. <u>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u> 6. <u>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u> 7. <u>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전시</u> 8. <u>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u> 9. <u>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 운영) ①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교육센터의 교육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 지원) ① <u>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음) ② -----<u>법인·단체</u>----- ----- ----- -----. 제8조(운영 자문) ----- -----<u>「고</u>
--	--

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휴관일) ① (생 략)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2.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
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
해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승인) ① 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
용승인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 1.~9. (생 략)
 10.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11.~12. (생 략)
- ② (생 략)

제17조(사용료 환불) ① (생 략)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
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

제9조(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
른 대체공휴일
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
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휴관하려고 하는-----

-----.

제12조(사용승인) ① -----
-----사
용승인 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1.~9. (현행과 같음)
 10. -5.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 11.~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받으려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육경비 환불) ① 교육 참여자가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육경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경비 환불) ① -----

---제20조-----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균형발전위원회의 개최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도시균형개발과 3층
- 전 화 : 도시균형개발과 균형정책팀(031-8075-3212)
- 팩 스 : 031-8075-490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균형개발과
입안자	과장명	성명	도시균형개발과장 공 석
	팀장명	성명	균형정책팀장 양 정 길
	담당자 성명·전화		김 무 섭 031-8075-32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략)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정책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고양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대한 검토 결과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및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
 - 팩 스 :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시작”을 “개의(開議)”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교통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주차교통과장 박 기 명
	팀장 성명	택시운영팀장 정 수 진
	담당자 성명·전화	김 동 휘 031-8075-296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u>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u> 2. <u>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u> 3. <u>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4. <u>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u>	<u>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u>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u> 2. <u>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u> 3. <u>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4. <u>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u>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u>제6조(위원회의 구성)</u> ①~③ (생략)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⑤ (생략)	<u>제6조(위원회의 구성)</u> ①~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현행과 같음)
<u>제7조(위원회의 운영)</u>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u>제7조(위원회의 운영)</u>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⑤ (생 략)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이하
“조합”)

4. (생 략)

④~⑤ (생 략)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개의(開議)-----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이하
“조합” 이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2년 고양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대한 검토 결과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및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
 - 팩 스 :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제1항 중 “조례”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하고자”를 “채용하려고”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교통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주차교통과장 박 기 명
	팀 성	장 명	택시운영팀장 정 수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동 휘 031-8075-296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자격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유형별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제1조(목적) ----- ----- -----시행에----- -----. 제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 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채용하려고 -----없으면-----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도서관의 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함(안 별표 1).
- 나. 상위법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및 제8조).
- 다. 운영·관리의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 정비함(안 제23조의2).
- 라.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901-03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를 ““시립도서관” ” 으로, “뜻한다” 를 “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 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 를 ““도서관 자료” ” 로,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를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 을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서관자료” 를 “도서관 자료” 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를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9조” 를 “법 제47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를”을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회원에게 한하여”를 “회원에게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외를 허용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사용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행위 포함”을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별표 1의 삼송도서관란 다음에 높빛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높빛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일로 34-8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별표 1] <개정 2016.10.18., 2021.6.4.>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
신원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
삼송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
높빛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4-8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
별꿈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한뫼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
가좌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일산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양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시립도서관”이란----- -----말한다. 2. “도서관 자료”----- ----- ----- -----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u>도서관자료</u>의 상호대차 6.~7. (생략)	제3조(기능)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 -- <u>도서관 자료</u>----- 6.~7. (현행과 같음)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설치)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④ (생략)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1.~5. (생략)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생략)

제2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밀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

-----.

②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12조(관외대출) ① -----
회원에게만-----예
외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관의 시설) -----
-----시설-----
-----.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
-----사용하려고-----

-----.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해칠

7. (현행과 같음)

제23조(변상) ① -----

-----행위를 포함한다-----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① (생 략)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⑤ (생 략) ⑥ 운영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생 략) 1.~4. (생 략) 5. 기타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두 차례 ----- ----- --.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5년----- -5년----- ---. ③~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25조의2(도서관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

<u><신 설></u>	<u>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25조의4(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u> <u>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table>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r> <td>화정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td></tr> <tr> <td>행신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td></tr> <tr> <td>원당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td></tr> <tr> <td>신원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td></tr> <tr> <td>삼송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td></tr> <tr> <td>화정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td></tr> <tr> <td>행신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td></tr> <tr> <td>별꿈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td></tr> <tr> <td>아람누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td></tr> <tr> <td>마두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td></tr> <tr> <td>백석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td></tr> <tr> <td>풍동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td></tr> <tr> <td>식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td></tr> <tr> <td>대화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td></tr> <tr> <td>한뫼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td></tr> <tr> <td>덕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td></tr> <tr> <td>가좌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td></tr> <tr> <td>주엽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td></tr> <tr> <td>일산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td></tr> </table>	명 칭	위 치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	신원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	삼송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	별꿈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한뫼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	가좌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일산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table> <tr> <th>명 칭</th><th>위 치</th></tr> <tr> <td>화정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td></tr> <tr> <td>행신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td></tr> <tr> <td>원당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td></tr> <tr> <td>신원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td></tr> <tr> <td>삼송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td></tr> <tr> <td>높빛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4-8</td></tr> <tr> <td>화정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td></tr> <tr> <td>행신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td></tr> <tr> <td>별꿈도서관</td><td>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td></tr> <tr> <td>아람누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td></tr> <tr> <td>마두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td></tr> <tr> <td>백석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td></tr> <tr> <td>풍동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td></tr> <tr> <td>식사도서관</td><td>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td></tr> <tr> <td>대화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td></tr> <tr> <td>한뫼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td></tr> <tr> <td>덕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td></tr> <tr> <td>가좌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td></tr> <tr> <td>주엽어린이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td></tr> <tr> <td>일산도서관</td><td>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td></tr> </table>	명 칭	위 치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	신원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	삼송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	높빛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4-8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	별꿈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한뫼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	가좌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일산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
명 칭	위 치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																																																																																		
신원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																																																																																		
삼송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																																																																																		
별꿈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한뫼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																																																																																		
가좌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일산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																																																																																		
명 칭	위 치																																																																																		
화정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3번길 25-6																																																																																		
원당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87																																																																																		
신원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4																																																																																		
삼송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73																																																																																		
높빛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4-8																																																																																		
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3																																																																																		
행신어린이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81번길 42																																																																																		
별꿈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37																																																																																		
아람누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마두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5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풍동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08																																																																																		
식사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6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한뫼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																																																																																		
덕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128																																																																																		
가좌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																																																																																		
주엽어린이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4																																																																																		
일산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586-6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도서관 시설 용어의 뜻과 이용자 준수사항인 음식물 섭취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재지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료실”과 “열람실”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의2).
- 나.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재지정함(안 제3조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 다. 이용자 준수사항의 음식물 섭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
-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조례로 규정하고 삭제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901-03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 행신·원당·삼송·아람누리·백석·풍동·대화·덕이·일산도서관,”을 “매주 월요일: 행신·원당·신원·별꿈·아람누리·백석·풍동·대화·덕이·일산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 화정·신원·마두·식사·한뫼·가좌도서관,”을 “매주 금요일: 화정·삼송·높빛·마두·식사·한뫼·가좌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조(휴관) ① (생략) 1. (생략) 2.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 행신 · 원당 · 삼송 · 아람누리 · 백석 · 풍동 · 대화 · 덕이 · 일산도서관, 화정 어린이도서관 3.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 화정 · 신원 · 마두 · 식사 · 한뫼 · 가좌 도서관, 행신어린이 · 주엽어린이도서관 4.매주 월요일 : 별꿈도서관 5. (생략) ② (생략)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략) 1.~3. (생략)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각종 음식물 취식 행위 5.~8. (생략) ② (생략)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조	<u>제1조의2(정의)</u>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 ·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 행신 · 원당 · 신원 · 별꿈 · 아람누리 · 백석 · 풍동 · 대화 · 덕이 · 일산도서관,----- 3. 매주 금요일: 화정 · 삼송 · 높빛 · 마두 · 식사 · 한뫼 · 가좌도서관,----- <u><삭 제></u>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5.~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하고, 임의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시민안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정책팀(031-8075-2984)

- 팩 스 : 031-8075-493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과장 성명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팀장 성명	시민안전정책팀장 고윤남
	담당자 성명·전화	오진주 031-8075-2984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나.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업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8075-3566)

- 팩 스 : 031-8075-491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기업“이라 함은”을 ““여성기업”이란”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경제인“이라 함은”을 ““여성경제인”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을 ““여성경제인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을 “해당하는지”로, “확인방법”을 “확인 방법”으로,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를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기업지원과장 김 동 원
	팀 장 성 명	SOS팀장 최 규 형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은 영 031-8075-356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고양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고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생략)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1. “여성기업”이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2. “여성경제인”이란----- -----해당-----. 3. “여성경제인단체”란-----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해당하는지----- -----확인 방법----- -----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1.~4.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에 해당하는-----. 1.~3. (현행과 같음)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제10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u>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및 여성기업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u> <u>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u>1. 고양시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u> <u>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u> <u>3.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u> <u>4.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 위원</u> <u>5.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u> <u>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u> <u>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제12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u>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u> 제13조(위원장의 직무) <u>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제14조(회의) <u>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연간 과태료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031-8075-3299)

- 팩 스 : 031-8075-493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
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팀장 성명	장애인지원팀장 나인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용주 031-8075-3299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7-372호(2007.11.5.)로 능곡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39호(2010.7.29.)로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1-209호(2011.12.6.), 고양시 고시 제 2012-267호(2012.10.17.), 고양시 고시 제2013-45호(2013.1.25.), 고양시 고시 제2013-190호(2013.6.21.), 고양시 고시 제 2015-156호(2015.5.29.), 고양시 고시 제2015-244호(2015.8.21.), 고양시 고시 제2016-36호(2016.2.23.), 고양시 고시 제2016-255호(2016.10.21.), 고양시 고시 제2017-22호(2017.1.24.), 고양시 고시 제2017-300호(2017.9.26.), 고양시 고시 제2017-381호(2017.12.22.), 고양시 고시 제2018-59호(2018.3.13.), 고양시 고시 제2018-174호(2018.6.29.), 고양시 고시 제2018-191호(2018.7.13.), 고양시 고시 제2018-274호(2018.10.19.), 고양시 고시 제2018-339호(2018.12.14.), 고양시 고시 제2019-98호(2019.4.5.), 고양시 고시 제2019-213호(2019.7.16.), 고양시 고시 제2019-306호(2019.10.15.), 고양시 고시 제2020-174호(2020.6.30.), 고양시 고시 제2020-333호(2020.11.27.), 고양시 고시 제2021-265호(2021.7.20.), 고양시 고시 제2022-159호(2022.5.13.), 고양시 고시 제2022-278호(2022.8.16.), 고양시 고시 제2022-289호(2022.8.30.), 고양시 고시 제2022-312호(2022.9.27.)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고양시 고시 제 2016-261호(2016.10.2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 2019-241호(2019.8.23.) 및 고양시 고시 제2019-39호(2019.2.15.)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9-248호(2019.8.27.)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정정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0-218호(2020.8.7.) 및 고양시 고시 제2022-298호(2022.9.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양시 고시 제2022-316호(2022.9.30.)로 부분준공인가 고시한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 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23. 1. 17.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종류) : 고양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명 :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덕양구 호수로16번길 7 일원 (토당동 271-4번지 일원)	40,753.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김주희, 전화:031-938-0972)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5, 302호 (토당동, 형제빌딩)

4. 부분(건축물) 준공 인가일 : 2022. 09. 30.

5. 준공 인가일 : 2023. 01. 16.

6. 준공인가 내역

가. 건축물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주용도	비고
합 계		23,814.8	96,467.5	8		643		
능곡 1-1	공동주택	18,207.1	71,294.56	5	지하2층 ~ 지상34층	49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22.9.30. 부분준공 인가사항
능곡 1-2	주상복합	3,966.9	18,252.09	2	지하3층 ~ 지상18층	150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능곡 1-3	업무시설	1,640.80	6,920.87	1	지하2층 ~ 지상12층	오피스텔 48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나. 토지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비 고
합 계		40,753.2	100.0	
택 지 (획지)	소 계	23,814.8	58.5	2022.9.30. 부분준공 인가사항
	능곡 1-1	18,207.1	44.7	
	능곡 1-2	3,966.9	9.8	
	능곡 1-3	1,640.8	4.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938.4	41.5	금회준공
	공공문화 (능곡1-4)	457.0	1.1	
	학 교	78.4	0.2	
	녹 지(공원포함)	2,091.1	5.1	
	도 로	13,765.2	33.8	
	주 차 장	546.7	1.3	

다.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 : 13,765.2㎡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1	37	20~33	집산도로	1,775 (555)	토당동 413-19	토당동 282-8	일반 도로	경고제69호 78-03-13	경고제69호 78-03-13	
중로	1	99	22~38	보조간선 도로	212	토당동 282-8	토당동 273-2	일반 도로	건고제570호 71-09-27	건고제570호 71-09-27	
중로	3	능16	12	국지도로	61	토당동 280-49임	토당동 282-21대	일반 도로	고고제190호 13-06-21	고고제190호 13-06-21	
중로	3	47	12	국지도로	25	토당동 799-35도	토당동 280-9임	일반 도로	기존 원능1토당	기존 원능1토당	
소로	덕2	601	8~10	집산도로	580 (5)	토당동 258-2	토당동 247-3	일반 도로	경고제7호 90.01.06	경고제7호 90.01.06	
소로	덕2	602	8~10	집산도로	325 (8)	토당동 328-8	토당동 301-24	일반 도로	경고제7호 90.01.06	경고제7호 90.01.06	
소로	덕2	604	8~11	집산도로	428	토당동 301-24	토당동 268-29	일반 도로	고고제333호 20-11-27	고고제333호 20-11-2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주차장 : 546.7㎡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①	주차장	주차장	토당동 335-90 일원	546.7	고양고제190호 13-06-21	

□ 녹지 : 1,767.5㎡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①	녹지	경관녹지	토당동 277-18 일원	1,592.6	경고제2010-239호 10-07-29	
㉔	녹지	완충녹지	토당동 301-26 일원 (강대동 1115-3번지)	174.9 (78,216.3)	경고 제69호 78-03-13	

주) ㉔호 완충녹지 내용중 ()는 구역외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 공원 : 323.6㎡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능1	공원	소공원	토당동 296-4 일원	323.6	고양고제190호 13-06-21	

□ 학교 : 20,684.4㎡ (78.4㎡)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㉓	학교	초등 학교	토당동 301 일원	20,684.4 (78.4)	경고 제357호 88-12-31	능곡초교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공청사 : 457.0㎡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①	공공청사	우체국	토당동 296-75일원	457.0	고양고제156호 15-05-29	능곡 우체국

7. 의제처리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인·허가 등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 끝.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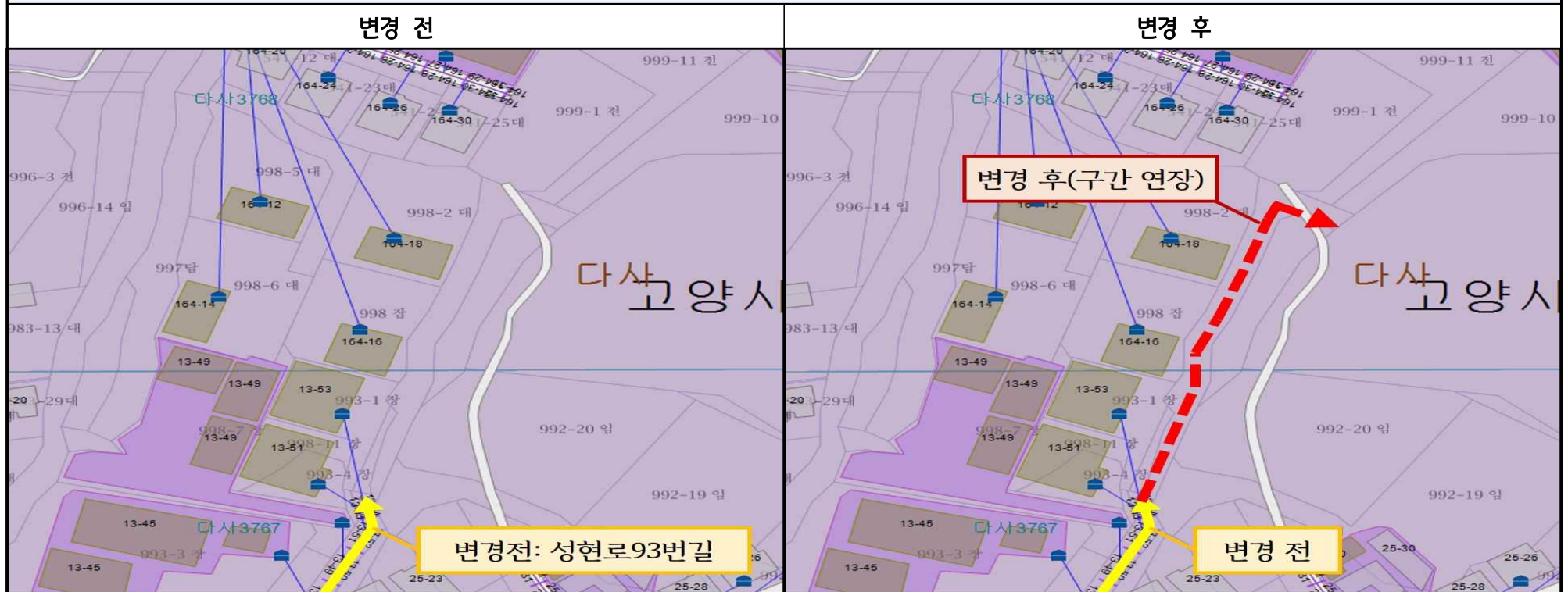
고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3. 1. 17.(화)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조서 및 도면)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현로93번길'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도로명	관할 구역	구분		도로구간		길이(m)	폭(m)	기초번호 간격(m)	기초번호	변경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기점	종점							
성현로93번길 (1차종속)	고봉동	도로구간 변경	변경 전	성석동 988-17	성석동 993-2	224	5	10	13-1(2) → 13-53(54)	종속구간 연장	2023. 1. 17.	2023. 1. 17.
			변경 후	성석동 988-17	성석동 999-8	390	5	10	13-1(2) → 13-(78)			

도로구간 변경 도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